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25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개정안 중 ‘대통령령’이란 입법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명확한 법령을 명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조의 “대통령령으로”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수정함(안 제1조).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대통령령으로” 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 ----- ----- ----- ----- ----- ----- ----- ----- ----- -----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 ----- ----- ----- ----- ----- -----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 ----- ----- ----- ----- ----- -----.</p>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9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에서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로 한다.

제3조 중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법 제32조제5항”

을 “법 제46조제6항”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접근성” 을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한다.

제6조 중 “정보접근성” 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2조의2제1항” 을 “법 제47조의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접근성” 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접근성” 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로 한다.

제9조 중 “정보접근성” 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접근성” 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접근성” 을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

제3조(책무) -----
----- 정보통신접근성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정보통신접근성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접근성 -----

3. 4. (현행과 같음)

5. ----- 정보통신접근성 -----

제5조(실태조사) ① -----
----- 정보통신접근성 -----
----- 법 제46조제6항에 -----

----- 정보통신접근성 -----

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2. 3.(생략)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보통신접근성-----

-----.

제6조(추진사업) -----
----- 정보통신접근성 -----
-----.

1. ----- 정보통신접근성 -----
2. ----- 정보통신접근성 -----
3. -- 제47조의제1항에----- 정보통신접근성 -----
4. (현행과 같음)
5. ----- 정보통신접근성 -----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

-----.

1. 2. 3.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
----- 정보통신접근성 -----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

② ----- 정보통신접근성에-----
-----.

제8조(위원회) ① -----
-----정보통신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정보통신접근성 -----

②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 정보통신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정보통신접근성 -----
----- 정보통신접근성 -----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① -----
정보통신접근성 -----

----- 정보통신접근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
정보통신접근성 -----

-----.